##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14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김형동・우재준・임이자

유용원 • 김위상 • 박대출

박정훈 • 박정하 • 한지아

조지연 · 김석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 법률 제 호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운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 ③ 학교환경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u>&lt;신 설&gt;</u>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u>정한다.</u>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u>②</u>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u>학교환경교육</u>	제1항에 따
을 실시하여야 한다.	른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성
	취 기준과 운영 요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실시
	<u>하여야 한다</u> .
<u>&lt;신 설&gt;</u>	③ 학교환경교육과정의 편성ㆍ
	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lt;신 설&gt;</u>	④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활성
	화를 위하여 학교·가정·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u>야 한다.</u>